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양질의 활동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규칙이 교재 개정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방지, 최신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반영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세부 교육과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8. 7.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세부 내용을 하위규정으로 운용

시행규칙에서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범위를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에도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내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자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통일을 위해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활동보조의 확인자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같다”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3 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1)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2)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활동지원의 이해, 서비스 실천, 현장실습 등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2)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활동지원의 이해, 서비스 실천, 현장실습 등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상자 선정기준란 중 “직장·학교생활”을 “직장
· 학교생활·질병”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의2서식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 뒤쪽의 작성방법과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활동지원기관번호							
수 급 자	성명	생년월일						활동지원등급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제공일 및 제공시간(시작시간~종료시간)							
		/	/	/	/	/	/	/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소계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소계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소계								
그 밖의 제공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서비스 제공 시간									
총 서비스 이용금액									
확 인	활동지원사(인 또는 서명)								
	본인 또는 보호자(인 또는 서명)								
	전담관리인력(인 또는 서명)								
수급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작성방법

1. 서비스의 세부 내용별로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2. 그 밖의 제공서비스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괄호 안에 적고 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3.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때마다 작성합니다.
4. 전담관리인력은 매주 1회 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오그라듦(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드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 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 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u>같</u> <u>다</u> .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 ----- ----- <u>같</u> <u>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u> <u>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